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사업추진 관련 회계·세무분야 사전협의(자문) 철저시행 안내

1. 신규사업 추진 등 관련 회계·세무분야 사전협의(자문)와 관련입니다.

2. 신규·대행사업 등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회계·세무처리상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심사부 사전협의 및 외부기관 자문을 시행코자 하니, 각 부(센터)에서는 업무추진시 협의 절차에 따라 회계·세무상 사전협의(자문)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세무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참고로, 우리공사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자체사업 및 시 수탁사업 등에서 상당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어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주요 사전협의(자문) 대상업무

- 공사 주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·세무처리상 사전검토 필요사안
- PF사업, REITs, 도시재생 등 신사업 추진 관련 회계·세무처리상 검토 필요사안
- 시 대행사업 등 (신규)추진시 회계·세무상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
 - * 市와 사업추진 초기, 협약(계약) 체결시 및 정산단계까지 각 사업단계별로 회계심사부와 사전협의 철저 요망
- 임차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임대사업 추진 관련 회계·세무상 사전검토 필요사안

나. 단계별 협의(자문) 절차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(필요시)
자문주체	회계심사부	회계·세무고문	외부 자문사
자문방법	· 회계심사부 담당자 (회계사3, 세무사2 포함)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사안별 사전검토	· 1단계 회계심사부 담당자 자문 결과 심도있는 회계·세무자문 필요시 회계·세무고문에 자문 의뢰 * 자문사 Pool이 협소하여 외부자문 시행전 회계심사부 사전협의(필수)	· 소관부서에서 외부자문사 별도 용역 시행 (상당 수준의 인력·시간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)

다. 회계·세무고문 현황

자문사	용역기간	담당자	주요 자문분야	비고
신한회계법인	2016.01.01~12.31	양현승 회계사	회계, 세무분야	
삼정회계법인	2016.01.01~12.31	오익환 회계사	세무분야	
세무법인공감 송파지점	2016.01.01~12.31	박내천 세무사	세무분야	

. 끝 .

기 획 경 영 본 부 장

수신자 SH부01~71, SH센터01~11

부 원 **최선미** 회계심사부장 **고상호** 경영지원처장 **문완식** 기획경영본부장 **김우진** 01/19

협조자

시행 회계심사부-186 (2016.01.19) 접수 ()
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27호
우 135-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(개포동 14-5) / <http://i-sh.co.kr>
전화 02-3410-7220 전송 02-3410-7090 / shtax@i-sh.co.kr / 공개